

## 5.1.3 정보전산원운영규정

제정 1996. 06. 19.

전부개정 2013. 11. 29.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정보전산원은 초당대학교정보전산원(이하 "정보전산원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정보전산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직무) 정보전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업무로 한다.

1. 교육·연구지원 및 이를 위한 정보과학 연구·개발
2. 학사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, 정보처리, 정보자료 관리
3. 캠퍼스 전산망 구축 및 관리운영
4. 재학생 및 교직원의 전산교육 및 실습
5. 정보처리장비의 확보 및 운용
6. 국내·외 교육연구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처리 지원
7. 지역사회 정보화 지원·교육 업무
8. 기타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

### 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구성) ① 정보전산원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원장, 직원 및 조교를 둔다.

- ② 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원장은 정보전산원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전산원을 대표한다.
- ④ 직원 및 조교는 각 팀의 업무를 보좌한다.

제5조(조직 및 업무) ① 정보전산원에 시스템개발운영팀, 네트워크운영팀, 교육연구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- ② 시스템개발운영팀은 대학 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, 학사행정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, 정보전산 시스템 관리,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, 정보통신 민원사항, 정보전산원 제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네트워크운영팀은 교내 정보전산 네트워크 구축, 교내·외 네트워크 운영관리,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④ 교육연구지원팀은 정보통신교육 및 교육실습시설관리,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, 온라인강좌, 대학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 및 업무) ①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의 본교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정보전산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정보전산원의 기본운영계획
2. 정보전산원의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정보전산원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제정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회의 등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